

□ 신청시 제출 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필수여부	대상
1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HWP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2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	(서식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	(서식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	(서식5)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지자체)	PDF	필수	지자체
6	(서식6)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연구개발기관용)	PDF	해당시	해당기관
7	(서식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	(서식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필수	해당기관
9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필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지역전략산업기반고도화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서식

2026. 3

□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시 유의 사항

- ☞ 반드시 아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
-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가능
- ☞ 신청자(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 본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내 작성요령, [참고1], [참고2], [참고3] 은 삭제 후 제출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V] 신청용 [] 협약용		보안등급	
중앙행정기관명		산업통상부		사업명		일반[V], 보안[]	
전문기관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역사업명		지역전략산업기반고도화사업	
공고번호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 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선정방식		정책지정[] 지정공모[V]		품목공모[] 분야공모[]		자유공모[]	
기술분류	산업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			
		영문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단계	1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2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3년차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지방자치단체 등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총계							
1단계	1년차						
	2년차						
	3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역할
			실무자				기관유형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지자체 등)			책임자				지자체
			실무자				○○도 지자체 ○○시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사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이
하
지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 (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규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과제 선정 및 협약시 기입).
9. 선정방식: 공모로서 제1항의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0. 산업기술분류: 과제에 해당하는 산업기술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명과 비중을 기재하여, 3개 순위를 합산하여 비중이 100이 되도록 기재합니다.
1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하여, 3개 순위를 합산하여 비중이 100이 되도록 기재합니다.
12.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를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 2) 해당 기관이 국의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립"으로 기재합니다.
 -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8. 컨소시엄 기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19. 기관유형
 -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5) 「국방과학기술소속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기술소속
 -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8)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 10)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 1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20.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1. 기관장 서명: 신청서 작성·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인 직인으로 날인하고,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요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세부사업명		지역전략산업기반고도화(R&D)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지역전략산업기반고도화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산업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YYYY. MM. DD - YYYY. MM. DD(년 개월)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천원, 지방자치단체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응용[] 개발[] 기타[O]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기반조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단계	1년차	목표	
		내용	
	2년차	목표	
		내용	
		목표	
		내용	
3년차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부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과제 선정 및 협약시 기입).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제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자,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목 차

I. 수행계획	0
1. 과제 개요	0
1) 산업(기술) 개요	0
2) 국내·외 산업동향	0
3) 인프라 구축현황	0
4) 수요 분석	0
2. 과제 필요성	0
1) 기반구축사업 SWOT 분석	0
2) 정부지원 필요성	0
3) 산업 연계효과	0
4) 사업추진 역량	0
3. 과제 목표 및 내용	0
1) 최종 목표	0
2) 성과지표 및 연차별 목표	0
3)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0
4) 추진내용	0
5) 수행일정	0
4. 과제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0
1) 추진전략·방법	0
2) 추진체계	0
5.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0
1) 성과 활용방안	0
2) 기대 효과	0
3) 재원조달 및 자립화 전략	0

목 차

6.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0
1) 안전관리 이행계획	0
2) 과제 관련 안전관리 방안(안전관리형 과제 지정시)	0
II. 수행역량 및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0
1. 연구개발기관 현황	0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0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0
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	0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0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0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0
2) 연구개발비 총괄 사용계획	0
3) 연차별 연구개발비 상세 사용계획 (주관연구개발기관 : ○○○○○)	0
4) 연차별 연구개발비 상세 사용계획 (공동연구개발기관 : ○○○○○)	0
5) 연차별 연구개발비 상세 사용계획 (공동연구개발기관 : ○○○○○)	0
:	
붙임.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0

I. 수행계획

1. 과제개요

1) 산업(기술) 개요 ※ 최대 10p 이내

가. 정의 및 범위

나. 특성

다. 비전-발전방향-국가연구개발 정책과의 연관성

- 비전
- 발전방향
- 관련 산업 및 기술
- 국가 산업정책과의 연관성
- 중요성

■ 수행과제의 정의 및 범위, 특성, 전후방산업 연관성 등 개요 기재

2) 국내·외 산업동향

가. 시장동향

나. 기술동향

다. 기업동향

■ 국내의 시장동향, 기술동향, 기업동향(공급사슬 변화 등) 기재

3) 인프라 구축현황

가. 국내 인프라 구축 현황

기관명 (소재지)	기술분야	구축장비 및 서비스 제공 분야	비고 (차별화 또는 연계방안 등)
000연구원 (경남)			

나. 국외 인프라 구축 현황

기관명 (소재지)	기술분야	구축장비 및 서비스 제공 분야	비고 (차별화 또는 연계방안 등)
000연구원 (미국)			

■ 출연연, 연구기관, 지역혁신센터 및 지역특화센터 등을 포함한 국내 유사 인프라 구축기관과 국외 유사 인프라 구축기관의 현황을 작성

4) 수요분석

가. 수요기업 현황분석

N0	기업명	업종	주요업무	매출액 (억원)	고용 현황 (명)	부설 연구소 (○, X)	지역
1							
2							
3							
4							
...							
합계							

나. 수요기업 협력방안

NO	기업명	기업 지원 세부추진내용	협력방안								
			장비 활용	공동 연구	기술 지도	교육 연계	창업 지원	기술 이전	기술 상담	정보 제공	기타
1											
2											
3											
4											
...											
합계											

■ 과제수행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현황 기재

■ 협력방안 세부항목을 중복하여 “V” 표기

2. 과제 필요성 ※ 최대 10p 이내

1) 기반구축사업 SWOT 분석

		강점(S)	약점(W)
		-	
기회 (O)		(SO전략)	(WO전략)
위협 (T)		(ST전략)	(WT전략)

- 국내외 관련 인프라 현황분석 등 중심으로 기술·기반구축 관점에서 서술

2) 정부지원 필요성

가. 자체해결 한계점

나. 정부지원을 통한 해결방안 및 기대효과

- 해당 사업에 대한 SWOT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지원의 필요성 기재
- 자체해결 한계점은 구축예정 인프라에 대한 수요에 대해 서술
- 정부지원 기대효과는 기업성장 및 고용창출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서술

3) 산업 연계효과

가. 산업 · 기업 연계효과

나. 지역(전략)산업 연계(해당 시)

- 본 과제 수행을 통한 기존 산업·기업성장 연계효과 기재

4) 사업추진 역량

가. 주요 사업추진 실적

기관명	사업내용 및 활용현황	연도	지원기관
	○ 과제명 : ○ 내용 : ○ 활용현황 :		

- 연구개발기관의 유사 사업 수행실적 기재 및 본 사업 기여효과를 서술

나. 인적 현황

다. 보유 인프라 현황

- 동 과제와 연관된 센터 및 장비구축 현황, 입주기업 현황 등을 서술

3. 과제 목표 및 내용

1) 최종 목표 (서술) ※매우 상세 기재

가. 과제목표

- ~~~~~(과제제안요청서(RFP)의 과제목표를 최대한 준용할 것)

나. 주관연구기관 역할 및 목표

- ~~~~~

다. 공동연구개발기관 역할 및 목표

- ~~~~~

< 최종목표 및 수행내용(요약) >

구분	연구개발기관	최종목표	비중	수행내용
장비 확충		0 -		0 0
		0 -		0 0
장비 집적화 (이전재배치)		0 -		0 0
		0 -		0 0
기술지원		0 -		0 0
		0 -		0 0
전문인력 양성		0 -		0 0
		0 -		0 0
전용공간 확보		0 -		0 0
		0 -		0 0
합계	-		100	-

- 상기 구분에서 제시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목표, 비중(총합이 100), 세부목표 등을 포함하여 1페이지 이내로 기재함
- '장비확충'은 장비, 시설기자재를 신규구축 또는 업그레이드, 활용하는 목표에 대하여 기재함
- '장비집적화'는 기구축 장비, 시설기자재를 지역내 혁신거점으로 이전·재배치하는 목표에 대하여 기재함
- '기술지원'은 장비를 기반으로 패키징형 장비활용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기업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기재함
- '전문인력 양성'은 문제해결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비관리자의 기업지원서비스 역량 강화 내용 등을 기재함

①장비 확충	②장비 집적화	③기술 지원	④전문 인력 양성
장비 도입, 노후 장비 교체, 성능개선	기구축 장비의 이전 재배치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인증, 기술 애로 해결 등	장비를 활용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2) 성과지표 및 연차별 목표

구분	성과지표		비중 (%)	연차별 최종목표									
				계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공동연구개발기관1 (기관명)			공동연구개발기관2 (기관명)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장비 확충	필수	장비가동률	0										
	필수	장비당 이용기업(기관)수	0										
	선택		0										
장비 집적화	필수	장비가동률	0										
	필수	장비당 이용기업(기관)수	0										
	선택		0										
기술 지원	필수 (3개 中 2개 이상)	시험·평가·인증 건수	0										
		시제품 제작 건수	0										
		기술지도 건수	0										
	필수	연계협력 지원 건수	0										
	필수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0										
	필수	수혜기업·지원기관 신규고용 인원	0										
전문 인력 양성	필수	수혜기업(기관)·지원기관 전문인력 양성 수	0										
	선택		0										
전용 공간 확보	선택	건축 진행률	0										
	선택		0										
기타	선택	지역 내 기업 유치 건수	0										
합계			100										

- 성과지표는 다음페이지 <지역전략산업기반고도화(R&D) 성과지표 안내>를 참조하여 작성
- 목표치 설정시 앞의 "1) 최종목표", 뒤의 "3)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과 일관성 있고 연결되도록 작성
- 전체 지표의 비중 합계가 100이 되도록 작성
- 필수지표는 반드시 작성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선택지표 추가 및 작성 가능

지역전략산업기반고도화(R&D) 성과지표 안내

(성과지표 안내 페이지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삭제)

① 성과지표 목록(필수 여부) 및 연구시설장비 대상 범위

구분	No	과제 성과지표명	필수여부	연구시설장비 대상범위
구축장비 성과 측정	1	장비가동률	필수	3천만원 이상 투입된 신규, 이전설치, 성능개선(업그레이드) 장비 기준 측정
	2	장비당 이용기업(기관)수	필수	
기술지원 성과 측정	3	네트워크 활동 건수	필수	신규구축 장비, 이전설치 장비, 성능개선 장비, 유지보수 장비, 현물로 책정된 기 보유 장비, 기관보유장비에 기재한 장비를 활용하여 지원한 경우 (단, '기술지도'와 같이 수행기관 전문지식을 통한 컨설팅 등 시설장비 미활용 실적도 포함)
	4	시험·평가·인증 건수	필수	
	5	시제품 제작 건수	(3개중2개 이상 선택)	
	6	기술지도 건수		
	7	연계협력 지원 건수	필수	
	8	수혜기업(기관)·지원기관 전문인력 양성 수	필수	
	9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필수	
기타	10	수혜기업 지원기관 신규고용 인원	필수	선택
	11	지역 내 기업 유치 건수(예시)	선택	
	12	건축 진행률(예시)	선택	-

* 지원기관의 보유장비를 활용한 지원만 포함, 외부기관 장비의 작·간접 사용 지원은 불가

* 이전설치 장비: 기존 설치장소에서 이전설치한 장비로서 i-tube등록정보(설치장소)를 변경완료한 장비

* 성능개선 장비: 주장비 성능개선을 위한 보조장비 등으로 ZEUS또는 i-tube심의를 받아 등록된 장비

② 필수 성과지표

1	장비 가동률	
정의 / 단위	신규 및 성능개선 시설장비의 연간 가동률 측정	단위: %
측정산식	$\frac{\sum (\text{시설장비별 가동률})}{\sum (\text{가동률 계산 시설장비 수})}$ * 각 시설장비별 가동시간/가용시간	
측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식설명: 시설장비 가동률의 평균 시설장비: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투입된 신규 구축 또는 성능개선(업그레이드) 장비, 이전설치 장비 시설장비 가용시간(1년 기준) = 주5일 × 50주 × 8시간 = 2,000시간 i-tube 시스템 등록한 장비별 가동실적을 통해 가동률 산출 	
예시	가동률이 A장비 20% B장비 30% C장비 70%인 경우 (20% + 30% + 70%) / 3개 장비 = 40%	

2	장비당 이용기업(기관) 수	
정의 / 단위	시설장비의 활용 기업(기관) 수를 측정	단위: 개
측정산식	중복을 제외한 시설장비의 이용 기업(기관) 수	
측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식설명: 신규, 이전설치, 성능개선 장비의 이용기업(기관) 수 합계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모든 기관의 수를 집계 시설장비: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투입된 신규 구축 또는 성능개선(업그레이드) 장비, 이전설치 장비 가동장비별로 동일기업(기관)이 다수 이용한 경우에는 1건으로 산정(중복 제거) i-tube 시스템 등록한 장비별 이용기업(기관)과 동일해야 함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장비 이용실적(a기업 4회, b기업 2회, c기업 1회) B장비 이용실적(a기업 3회, d기업 1회) C장비 이용실적(a기업 1회, e기업 1회) 장비이용기업(기관) 수 = a기업 + b기업 + c기업 + d기업 + e기업 = 5개 기업 * a기업이 A,B,C개 장비를 다 이용한 경우 1개 기업으로 산정 (장비간 중복 불인정)	
3	네트워크 활동 건수	
정의	세미나, 간담회, 워크숍 등 네트워크 활동 실적	단위: 건
측정산식	$\sum$ (당해년도 세미나, 간담회, 워크숍 등 활동 건수)	
측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미나, 간담회, 워크숍은 주관 또는 참여 기관과 외부기관이 2개 이상 참여해야 실적으로 인정(비대면 활동실적도 인정 가능, 단 추가적 증빙 필요)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등 주관/참여기관이 과제 운영목적으로 개최하는 모임은 제외 수행기관이 주관한 활동 건수만 인정 (외부기관 행사 단순 참여는 실적에 불포함) 주관 및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건은 해당 과제에서 1건으로만 집계(중복 인정 불가) 수행기관이 A기업 10명과 간담회 개최시 → 불인정 (외부기관 2개 이상 미참여) 외부기관이 개최하는 ○○기술대전/○○학술대회 등 행사에서 특정 세션을 주관하여 운영(세미나, 간담회, 워크숍 등과 유사 형태)한 경우→실적 인정 특정 행사에서 상담부스(홍보부스)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담한 경우→실적 불인정 	
4	시험·평가·인증 건수	
정의	지원기관의 보유 장비를 활용한 시험·평가·인증 건수	단위: 건
측정산식	$\sum$ (시험·평가·인증 건수)	
측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기관 보유 시설·장비로 지원시에만 인정 외부기관 시설장비의 사용을 통한 간접적 지원은 제외 	
5	시제품 제작 건수	
정의	지원기관의 보유 장비를 활용한 시제품제작 건수	단위: 건
측정산식	$\sum$ (시험·평가·인증 건수)	
측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기관 보유 시설·장비로 지원시에만 인정 외부기관 시설장비의 사용을 통한 간접적 지원은 제외 	
6	기술지도 건수	
정의	지원기관의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통한 기술지도 건수	단위: 건
측정산식	$\sum$ (기술지도 건수)	
측정기준	수행기관 연구자의 전문지식과 노하우 등을 통한 기술지원·사업화 컨설팅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외부기관 시설장비 또는 위탁업체를 통한 간접적 컨설팅 지원은 제외- 단, 기술지도 과정에서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함께 지원할 수 있음																									
7	연계협력 지원 건수																									
정의	복수의 연구개발수행기관이 연계·협력하여 기술지원한 건수			단위: 건																						
측정산식	Σ (당해년도 연계협력 지원건수)																									
측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 개 기업의 특정 제품(군)을 대상으로 2개 이상의 수행기관이 “시험·평가·인증”,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을 연계협력하여 지원하는 건수<ul style="list-style-type: none">“시험·평가·인증”,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의 정의 및 측정기준은 4·5·6번 지표와 동일연계협력 지원 건수는 주관기관이 대표로 목표치 산정 및 실적 취합하여 제출사업계획서 상에 작성된 수행기관 장비를 활용한 연계협력 지원 성과에 한정<ul style="list-style-type: none">신규구축 장비, 성능개선(업그레이드) 장비, 유지보수 장비, 현물로 책정된 기 보유 장비, 기관보유장비에 기재한 장비 모두 포함 (외부기관 장비 활용 실적은 불인정)연계협력 지원 실적에 포함된 시험·평가·인증,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실적은 각 지표별 실적(4·5·6번 지표)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예시 참조)연도별 2개 이상의 기관이 연계지원해야 실적으로 인정, 1건의 연계지원이 2개년에 걸친 경우 2개 이상 기관이 매년 지원시 연도별 성과 모두 인정(예시 참조)기관별 지원유형(시험평가인증, 시제품제작, 기술지도)이 같을 수 있음(예시 참조)연계협력 지원 건수 인정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전문가관과 사전 협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1건의 연계협력 지원에서 시제품제작 2건, 기술지도 1건 수행한 경우, 5·6번(시제품제작, 기술지도) 각 지표에도 동일한 지원실적 2건, 1건이 존재해야 함(일치)동 지표 측정기준을 만족하면서 매년 지원한 경우 연도별 연계협력지원 모두 인정<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연도별 지원성과에 대한 증빙은 각각 존재해야 함(지원계획서, 연계협력 지원일지 등)																									
	(예시1)	<div><div>연계협력 지원대상</div><div>A기업</div></div> <div><div>신청 ⇒ ⇐ 지원</div><div></div></div>	<table><thead><tr><th rowspan="2">수행기관명</th><th rowspan="2">지원유형</th><th colspan="2">지원실적</th></tr><tr><th>2023년</th><th>2024년</th></tr></thead><tbody><tr><td>○○연구소</td><td>시제품제작</td><td>○</td><td>○</td></tr><tr><td>□□TP</td><td>시험평가인증</td><td>-</td><td>○</td></tr><tr><td>○○대학교</td><td>기술지도</td><td>○</td><td>○</td></tr></tbody></table>	수행기관명	지원유형	지원실적		2023년	2024년	○○연구소	시제품제작	○	○	□□TP	시험평가인증	-	○	○○대학교	기술지도	○	○	<table><thead><tr><th colspan="2">연도별 연계협력 인정여부</th></tr></thead><tbody><tr><td>○</td><td>○</td></tr></tbody></table>	연도별 연계협력 인정여부		○	○
	수행기관명	지원유형	지원실적																							
			2023년	2024년																						
	○○연구소	시제품제작	○	○																						
□□TP	시험평가인증	-	○																							
○○대학교	기술지도	○	○																							
연도별 연계협력 인정여부																										
○	○																									
(예시2)	<div><div>연계협력 지원대상</div><div>B기업</div></div> <div><div>신청 ⇒ ⇐ 지원</div><div></div></div>	<table><thead><tr><th rowspan="2">수행기관명</th><th rowspan="2">지원유형</th><th colspan="2">지원실적</th></tr><tr><th>2023년</th><th>2024년</th></tr></thead><tbody><tr><td>○○연구소</td><td>시제품제작</td><td>○</td><td>-</td></tr><tr><td>□□TP</td><td>시험평가인증</td><td>○</td><td>-</td></tr><tr><td>○○대학교</td><td>기술지도</td><td>-</td><td>○</td></tr></tbody></table>	수행기관명	지원유형	지원실적		2023년	2024년	○○연구소	시제품제작	○	-	□□TP	시험평가인증	○	-	○○대학교	기술지도	-	○	<table><thead><tr><th colspan="2">연도별 연계협력 인정여부</th></tr></thead><tbody><tr><td>○</td><td>X</td></tr></tbody></table>	연도별 연계협력 인정여부		○	X	
수행기관명	지원유형	지원실적																								
		2023년	2024년																							
○○연구소	시제품제작	○	-																							
□□TP	시험평가인증	○	-																							
○○대학교	기술지도	-	○																							
연도별 연계협력 인정여부																										
○	X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관이 A기업의 특정 제품의 부품a를 시제품제작, B기관이 동일 제품의 부품b를 시제품제작 지원하여 1건의 연계지원을 완성한 경우도 성과로 인정																									

8	수혜기업 지원기관 전문인력 양성 수	
정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참여한 수혜기업(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인원 수	단위: 명
측정산식	Σ (교육별 당해년도 수혜기업(기관), 지원기관(주관 참여기관) 수료 인원)	
측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론 중심 교육이 아닌 장비실습 등 포함한 장비운영 전문가 육성 교육 비대면 교육도 실적으로 포함 가능(온라인 화상 교육 등) 교육 수료인원은 해당교육의 교육시수 2/3 이상을 참여한 경우에 인정 교육회차별 수료인원이 아닌 교육과정별 참여 인원을 측정(예시 참조) - 교육과정이 다르면 같은 인력이어도 중복 집계 재직자 및 대학생, 취업준비생 대상 세미나 등 일회성 교육 등 지양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3회(일)간 진행하는 A교육과정(총 24h)에서 3명이 신청하였고, 1회(8h) 3명, 2회(8h) 2명, 3회(8h) 2명이 참여한 경우, A교육과정 전문인력 양성 수는 2명 - 교육시수 총 24h의 2/3인 16h 이상 참여한 사람이 2명이고, 회차별 중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2명으로 집계 3명이 A과정과 B과정 전부 참여한 경우 과정별 중복은 인정하므로 6명(3+3)으로 집계 	
9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	
정의	지원사업의 기여도를 고려한 수혜기업의 매출액	단위: 백만원
측정산식	Σ (수혜기업 사업화 매출액×기여율)	
측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평가·인증,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를 받은 수혜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 기여율을 고려하여 측정 사업화 매출액은 매출발생 제품별로 작성 	
10	수혜기업 지원기관 신규고용 인원	
정의	지원사업의 기여도를 고려한 수혜기업의 신규 고용인원 및 지원기관의 신규 고용인원 측정	단위: 명
측정산식	Σ (수혜기업 신규고용인원×기여율) + Σ (지원기관(주관 참여기관) 신규고용인원)	
측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혜기업 신규고용: 시험·평가·인증,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를 받은 수혜기업에서 발생한 신규고용에 해당기업에서 산정한 기여율을 곱하여 산출 지원기관 신규고용: 동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한 지원기관의 신규 고용인원 사업화 성과가 없거나 발생 전이지만 사업지원과 연관되어 발생한 연구, 생산, 관리 인력 등의 수혜기업 고용실적도 인정 4대보험이 가입된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인력에 한함(아르바이트생 등 단기인력 제외) - 4대보험 가입된 날짜가 해당연도 내에 있어야 인정(가입년도와 성과연도 일치필수) 	

③ 선택 성과지표(예시)

12	지역 내 기업 유치 건수	
정의 / 단위	플랫폼 활용을 위해/통해 지역내로 기업이 이전 및 지사·분사 설립 또는 창업한 실적	단위: 건수
측정산식	Σ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내 기업 유치 건수)	
측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유치 - 기업이전, 지사·분사 설립, 창업 등 (연구소, 생산시설 등 포함) 타지역 소재 1개 기업이 지역내 지사, 생산시설, 연구소를 각각 설립한 경우 1건으로 집계(중복 제거)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지역 소재 A기업에서 사업수행지역에 a공장, b공장, c연구소 3건을 설립시 1건으로 인정 경기도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사업수행지역에 부설연구소만 이전한 경우 1건으로 인정 (본사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수행지역으로 유치한 것으로 인정됨) 사업수행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동일 지역에 신규 생산시설 구축시 실적으로 보지 않음 (지역입장에서 일자리나 투자가 늘어나도 새로운 기업이 유치된 것은 아니기 때문) 	
13	건축 진행률	
정의 / 단위	기반구축에 따른 센터 건축 진행률	단위: %
측정산식	(달성단계) / (총 진행단계)	
측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초 사업계획서 대비 건축 진행률을 측정 진행률은 총 진행단계 대비 달성단계로 계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총 진행단계(총13단계)] ①부지선정 및 인허가 획득 → ②토지매입 → ③건축사선정 → ④계획설계 (법규검토,기본계획 도면작성) → ⑤실시설계(세부재료, 디자인,세부도면등) → ⑥건축허가 → ⑦시공사선정 → ⑧착공신고 및 착공 → ⑨공사시행 → ⑩감리 → ⑪사용승인신청 → ⑫건축물등기 → ⑬준공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계별 달성 여부 확인이 가능한 증빙이 제시되어야 함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단계 중 "실시계획"까지 진행 시 전체 단계 중 5단계 달성으로 진행률 38%(5/13) 	

(상기 성과지표 안내 페이지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삭제)

3)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가. 성과지표 목표 및 설정근거

성과지표	목표 및 산출근거			
	성과지표 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산출 근거	측정산식 및 방법	성과증빙
장비구축 건수	◦ (예시) ○○○장비 등 00종 구축	◦(예시) 해당 장비의 필요성 및 수량 산출 근거 (수요조사 자료 제시 등)		장비별 NFEC 등록증
장비가동률	◦ (예시) 최종 장비 가동률 00% 이상 - 1차년 : 00% - 2차년 : 00% - 3차년 : 00%	◦(예시) 00 장비의 특성상 과제 수행 기간 내 00%가 최적의 목표인 근거	◦ 측정산식 : { $\sum(\text{연간 시설장비 가동시간} / \text{시설장비 가용시간})$ } / $\sum(\text{가동률 계산 장비})$ ◦ 측정대상 : 구축 또는 개선한 시설장비 ◦ 측정방법 : 장비별 사용일지 전수조사	장비별 사용일지
	◦ ◦	◦ ◦		
	◦ ◦	◦ ◦		

- 필수지표 10종은 측정산식, 측정대상, 측정기준은 앞의 성과지표 안내자료와 동일해야함
- 과제 특성에 따라 기반구축 목표 및 내용을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성과지표 설정근거를 제시

4) 추진 내용

가. 주요내용(서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비전, 목적,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내용을 상세히 서술 ~~~~~(과제제안요청서(RFP)의 과제내용을 최대한 준용할 것)

나. 상세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내용, 운영위원회 및 자체 장비도입심의회 운영계획 등 상세기재 ~~~~~(과제제안요청서(RFP)의 과제내용을 최대한 준용할 것)

다. 연차별 중점 추진내용

(단위: 천원)

구분	사업내용	주요 내용	주요 수행내용별 예산 사업비
1단계	1차년도	o 플랫폼구축	o 좌측 세부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화 된 추진내용들을 기재
		o 장비확충	
		o 기술지원	
		o 전문인력양성	
		o 건축	
	2차년도	o 플랫폼구축	
		o 장비확충	
		o 기술지원	
		o 전문인력양성	
		o 건축	
	3차년도	o 플랫폼구축	
		o 장비확충	
		o 기술지원	
		o 전문인력양성	
		o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사업비는 출연금(국비)과 지방비+민자를 합하여 기재 ■ 건축비는 예산편성 되어있는 과제만 작성

5) 수행일정

가. 1단계 1년차

구분	세부 내용	추진 일정 (월)				비중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건축						
장비구축						
기술지원						

나. 1단계 2년차

구분	세부 내용	추진 일정 (월)				비중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건축						
장비구축						
기술지원						

다. 1단계 3년차

구분	세부 내용	추진 일정 (월)				비중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건축						
장비구축						
기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수행일정은 연도별 추진 내용과 부합되게 구체적으로 기재

4. 과제 추진전략 · 방법 및 추진체계

1) 추진전략 · 방법

가. 기반구축 추진전략 및 로드맵

- 장비구축 방향 및 연차별 구축전략 포함하여 서술(건축, 인증획득 등 지원체계 포함)
- 전문 기반·기술 확보, 특화전략, 전담인력 확보계획 및 확보방안, 전용공간 확보전략 등 상세 작성

<로드맵 예시>



나. 신규 시설 · 장비 도입 및 활용 계획

다. 건축 및 전용공간 확보 전략

라. ○ ○ ○ ○

2) 기반구축 사업 상세내용

가. 수행내용 (장비확충, 건축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수행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재
- 연관 성과지표명 :

나. 수행내용

- 수행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재
- 연관 성과지표명 :

3) 운영위원회 및 장비심의위원회 운영계획

가. 운영위원회 및 장비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나. 운영위원회 구성현황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0조에 따라 구성 필요)

○

순번	구분	성명	직위	소속	비고
	지자체	임격정	주무관	경상북도 ○○○과	당연직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당연직
	참여기관책임자				당연직
	학계, 연구계, 산업계				선임직
	주관기관				운영간사

나. 장비심의위원회 구성현황

순번	구분	성명	직위	소속	비고
1					
2					
3					

- 운영위원회는 과제의 방향설정, 변경검토, 당해연도 사업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등 해당 과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심의대상 장비와 관련된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와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4) 연차별 시설·장비 구축 목록

가.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3천만원 이상 필수 작성, **조달청 중앙조달계약방식 구매만 인정**)
(단위: 천원/대)

구분		국문 장비명 (영문 장비명)	모델명	주요 사양	제작 국가	제작 회사	단가 (A)	수량 (B)	예상 가격 (C=A*B)	구축 방식	현금 /현물	구입 예정 연월	구축 유형
1 단 계	1 차 년 도									구매		23.09	신규구축
										임대		23.11	성능개선
										개발			유지보수
		소 계											
	2 차 년 도												
		소 계											
	3 차 년 도												
		소 계											
합 계							-	-		-	-		

- 구축방식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사항 기재
- 신규구축 및 성능개선 장비는 “붙임.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필수 작성
- 구축유형: 아래 3개 중 택 1
 - 신규구축(* 노후 장비교체를 위한 신규구축 포함)
 - 성능개선(* 주장비의 성능개선을 위한 보조장비 등 장비 심의가 필요한 장비 기재)
 - 유지보수(금액 상관없이 예상되는 유지보수 내역 모두 기재, 연간유지비용은 사용률 예측에 근거하여 산정)
- 장비사양 및 단가변동은 협약변경사항(필요시 도입 재심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원활한 과제수행을 위해 장비구입비 등은 최신 자료(견적서 등)를 확인하여 계상
- 3천만원이상의 장비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의거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승인 및 조달청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 1억원 이상 시설장비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의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승인 및 조달청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
 - 장비 도입 심의를 통과하지 않거나, 조달청 공식 문서 없이 임의로 중앙조달계약방식을 통하지 않을 경우 구입 불인정

나. 연구시설·장비 주요 용도, 전담인력 및 설치장소(3천만원 이상 필수 작성)

구분	연구시설·장비명	주요 용도	전담인력 (장비담당자)	세부 설치장소	
				보유기관명	센터명
1 단 계	1차 년도		○○○ 선임		
			○○○ 책임		
			○○○ 연구원		
	2차 년도				
			신규채용 (선임급)		
	3차 년도				

다.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 계획

						(단위: 천원/명)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장비명	구분 (기존/신규)	운영기간	비용		활용계획
				연간운영비	과제 반영비	
			yy-yy			
			yy-yy			

라. 후보 장비 목록

국문 장비명 (영문 장비명)	모델명	주요 사양	제작 국가	제작 회사	단가 (A)	수량 (B)	예상 가격 (C=A*B)	주요 용도	설치 장소	구축 유형
										신규
										성능
										개선
										유지
										보수
합 계										
■ 사업수행 중 장비심의시 단가 조정, 당해연도 구축장비의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차액 발생시 당해연도에 우선적으로 구축할 장비 목록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차액이 발생하여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상기 목록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담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승인) 후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계획 변경 후 집행 가능 - 전담기관 담당자는 사전 협의(승인)요청시 협약기간내 구축 계획(지출원인행위, 구입예정연월) 등을 검토 예정 										

5) 경쟁력 확보전략 ※ 3p 이내

가. 전문 기반(기술) 확보 및 전문분야 특화 전략

- 과제수행을 통해 과생되는 전문 기반.기술 확보 및 전문분야 특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서술

나. 전담부서 운영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

- 전담인력확보 계획은 활용목적이 분명하고, 확보전략[역할(장비운영, 기술서비스 등), 자격조건(학력, 전공분야, 경력 등), 확보시기 등]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실현가능한 내용을 기재

다. 전용공간 확보 전략 (주관/공동 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작성)

- 위치(상세주소) :
 - * 지역성장거점지역 :
- 규모 : 부지면적 m^2 , 건축연면적 m^2
- 용도 :

- 전용공간의 면적, 위치, 구조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구축추진 일정은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실현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 후 충분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서술

- 장비가 확충되는 주 전용공간(신축·기존 공간)은 다음의 지역성장거점지역에 해당하여야 함.

<지역성장거점지역>

- | | |
|-------------|----------------|
| 1. 국가산업단지 |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 2. 일반산업단지 | 9. 혁신도시융복합단지 |
| 3. 산학융합지구 | 10. 경제자유구역 |
| 4. 산업기술단지 | 11. 벤처기업육성특진지구 |
| 5. 도시첨단산업단지 | 12. 규제자유특구 |
| 6. 첨단의료복합단지 | 13. 기업도시 |
| 7. 연구개발특구 | |

예시) * 지역성장거점지역 : 7. 연구개발특구 - 광주특구

6) 시설·장비 이전·재배치 추진전략

가. 이전·재배치 대상 시설 및 장비

구분	연구시설·장비명	주요 용도	기존 설치장소		이전 설치장소	
			보유기관명	센터명	보유기관명	센터명
1 단 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나. 이전·재배치 연구시설·장비 상세내역

구분	국문 장비명 (영문 장비명)	모델명	주요 사양	제작 국가	제작 회사	단가 (A)	수량 (B)	구입 가격 (C=A*B)	구입 연월	이전재배치 비용	I-tube 등록 번호
1 단 계	1 차 년 도								23.09		
									23.11		
	2 차 년 도										
	3 차 년 도										

7) AX 기술지원

가. 데이터 수집·처리

나. 데이터 공개·공유

다. AI모델 개발

라. AI모델 활용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AX기술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수행내용 작성
 - AI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 AI 모델 개발 수준, 자원 구축 및 활용 방안, 관련 소요예산
 - AI 활용 기술지원 프로세스

8) 추진체계



- 컨소시엄 구성 및 기관별 역할 분담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도식 수정 가능)

5.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2p 이내

1) 성과 활용방안

- 과제 수행으로 예상되는 성과,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기재

2) 기대효과

- 과학·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효과·파급효과 등을 기재

3) 재원조달 및 자립화 전략(성과활용기간 포함)

- 연도별, 세부 기반구축 수행내용별 계획에 의거하여 서술식으로 작성

가. 재원조달 전략 및 계획

나. 연도별 예상/발생 수익금

구분	연차	수익 발생원	예상/발생 수익금(천원)	추정 근거/발생내역
1단계	1차년			
	2차년			
	3차년			

다. 성과활용기간 예상/발생 수익금

구분	연차	수익 발생원	예상/발생 수익금(천원)	추정 근거/발생내역
성과 활용 기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 수익 발생원은 장비활용수익, 전용공간 임차수익, 시험평가인증 수익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으나, 해당 수익이 동 사업에 사용가능한 수익원이어야 함
- 정부예산은 수익에 산정할 수 없음 (ex: 구축된 장비와 연계하여 주주된 정부사업비)
- 장비사용 수수료 등의 수익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준에 대하여 기재
- 연도별 예상발생 수익금은 성과활용기간을 포함하여 작성
- 추정근거는 예측 가능한 수요 규모, 서비스제공단가 등을 명시할 것

ex> 10건/년 × 500,000원 = 5,000,000원

6.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1) 안전관리 이행계획 (모든 과제 필수 작성)

(1) 안전책임자의 지정·운영

■ 과제 수행기간 동안의 안전책임자를 지정											
번호	구분	소속 기관	성명	직급 ¹⁾	생년 월일 (YYMMDD)	성별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1	주관	○○ 연구원	홍길동	책임	610101	남	○○대	1900	안전공학	박사	

(2) 안전관리규정의 제정·운영

■ 안전관리규정이 있는 경우 제정일자, 운영방법 기재, 없는 경우 제정 계획 등 기재

(3)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안전관리비는 간접비로만 편성해야 함 (예: 방진복, 안전모, 방진장갑, 폐액 등)
■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및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로서 인건비(미지급액 포함) 총액의 1~2%를 예산으로 반영해야 함 (출처: 연구실안전관리법)
- 대학, 대학원,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 총액의 1%이상 2%이하
- 기업부설연구소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인건비 총액의 2% 이하

(4) 안전사고발생시 보고 및 조치

■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 절차 및 체계도 작성

(5) 사고발생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

■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 절차 및 체계도 작성

(6) 안전교육 실시 등

■ 과제 수행기간동안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기간별(일, 주, 월, 분기 등) 안전점검 실시 계획을 상세히 작성				
구분	교육 제목	교육대상	교육 내용 상세	수행 일시
1차년도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신규교육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 이해 ○ 연구실 안전법 주요 내용 및 개정 안내	분기별 1회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보수교육			
2차년도				
3차년도				

2) 과제 관련 안전관리 방안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시 작성, 아닐 경우 삭제)

(1) 과제(기술) 관련 국내·외 안전사고 사례

○ 과제 관련 국내·외 안전사고 사례 목록

※ 과제 주요 수행(연구)내용, 취급 물질 등과 유사한 내용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 작성

No.	구분	안전사고 사례	발생시점
1	국내		2010년
2	국외(국가명칭)		
3			
...			

○ 과제 관련 국내·외 안전사고 사례 상세

※ 상기 목록에 제시한 안전사고 사례의 상세내용(사고경위, 내용, 피해규모, 조치사항 등) 작성

(2) 과제(기술) 관련 안전기준 및 준수 방안

○ 과제 관련 안전기준

※ 과제 주요 수행(연구)내용, 취급 물질 등과 관련한 안전관리 법률, 기준, 매뉴얼 등을 작성

No.	안전기준	조항
1		
2		
3		
...		

○ 안전기준 준수 방안

※ 상기 목록에 제시한 안전기준의 준수방안(안전 담당자 지정, 규정마련, 점검 및 진단, 교육훈련 등) 작성

(3) 과제(기술) 관련 위험성 사전 검토 및 예측 결과

○ 위험성 사전검토 및 예측 결과

※ 수행기관 자체 혹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위험성 검토, 예측 결과 주요내용을 작성
(필요시 별첨으로 서류 첨부)

- (예시) 평가공정 : 시제품 제작

주요 내용 (연구장비 구축 및 활용 중심)	위험요인	현재의 예방대책	현재의 위험성			개선대책	개선 (예 정) 일자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도 (빈도x 강도)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 도
예시) 리튬이온 분리막 개발	물반응성 물질 사용으로 폭발 위험	1. 보호구(보안경, 안전모 등) 착용 2. 작업구역 지정 및 습도관리	3	3	9	1.온습도 관리용 제습장치 설치	5.4	1	2	2
예시) 탄소강 슬래브 압연재 시제품 절단	공작기계 사용 시 상해 위험	1. 보호구(보안경, 안전모 등) 착용 2. 공작기계 사용 매뉴얼 작성	3	3	9	1.공작기계 안전 센서 부착	5.4	1	2	2

(4) 과제 수행 중 및 종료 후 안전점검(일상·정기·특별 안전점검 등)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계획

○ 과제 수행 중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① 수행기관 자체 점검

※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기간별(일, 주, 월, 분기 등) 안전점검 실시 계획을 상세히 작성

② 안전관리 전문기관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컨설팅 등 실시계획을 상세히
작성(항후 안전관리 이행결과 보고 시, 점검결과 첨부)

○ 과제 종료 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① 안전 책임자

※ 과제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동안의 수행기관 안전책임자를 지정

② 수행기관 자체 점검

※ 과제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동안,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기간별(일, 주, 월, 분기 등)
안전점검 실시 계획을 상세히 작성

③ 안전관리 전문기관 점검 및 안전진단

※ 과제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동안,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컨설팅 등 실시계획을 상세히 작성

작성 요령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작성 요령 표는 삭제

○ 과제 단위의 안전관리 방안

- “안전관리형 과제”란 연구실,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로 RFP/품목서 상 ‘안전관리’로 지정된 과제를 의미하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각 명시된 항목에 따라 안전사고 사례 분석, 안전기준 준수 방안, 위험성 사전 검토 및 예측결과, 안전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사업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40의3호에 따라 제출한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의 처리 가능)

○ 위험성 사전검토 및 예측 결과 작성 참고자료

<참고 1> 위험성 추정 예시

화학물질의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예시

1. 위험성 추정(3단계) : 노출수준(가능성)과 유해성(중대성)을 곱하여 산출

$$\text{위험성(Risk)} = \text{노출수준(Probability)} \times \text{유해성(Severity)}$$

(빈도) (강도)

<표 1> 노출수준(가능성)

구분	가능성	내 용
상	3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50% 초과 ~ 100% 이하
중	2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10% 초과 ~ 50% 이하
하	1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10% 이하

<표 2> 유해성(중대성)

구분	중대성	노 출 기 준 (TLV-TWA)	
		발생형태 : 분진(mg/m ³)	발생형태 : 증기(ppm)
대	3	0.01 초과 ~ 0.1 이하	0.5 초과 ~ 5 이하
중	2	0.1 초과 ~ 1 이하	5 초과 ~ 50 이하
소	1	1 초과 ~ 10 이하	50 초과 ~ 500 이하

<표 3> 위험성 추정

노출수준(가능성) \ 유해성(중대성)	대(3)	중(2)	소(1)
상(3)	높음 (9)	높음 (6)	보통 (3)
중(2)	높음 (6)	보통 (4)	낮음 (2)
하(1)	보통 (3)	낮음 (2)	낮음 (1)

2. 위험성 결정(4단계) : 위험성이 높은 순서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

<표 4> 위험성 결정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의 정도
7~9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4~6	보통	허용 가능	연간계획에 따라 개선
1~3	낮음		현재 상태 유지

II. 수행역량 및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 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 인력양성 목적 과제 포함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제지 (권, 쪽)	게제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 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 인력양성 목적 과제 포함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제지 (권, 쪽)	게제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3)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 전체 참여연구자(연구개발기관책임자, 학생연구자포함)에 대해 작성하며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은 등록이 불가함

번호	소속기관 (역할)	신규/ 기존/ 외부	성명 (국적)	직위	생년월일 (성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참여기간 (년/월)	본 과제 인건비 계상률 (%) (A)	타 국가연구 개발사업 인건비 계상률 (%) (B)	전체 인건비 계상률 합계 (A+B, %)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	KIAT (주관)	기존	김OO (한국)	팀장	'86.12.02 (남)	박사	전자 공학	'12	책임	'23.4~ 25.12	30%	70%	100%
2		기존	박OO (한국)	책임	'81.03.02 (여)	박사	컴퓨터 과학	'08	실무책임	'23.9~ 25.12	50%	-	50%
3	KEIT (공동)	기존	이OO (한국)	수석	'75.03.02 (남)	학사	기계 공학	'95	공동책임	'23.4~ 23.12	50%	-	50%
										'23.4~ 25.12	100%	-	100%
4	KETEP (공동)	기존	기OO (한국)	선임	'86.03.02 (남)	박사	에너지 공학	'12	공동책임	'23.4~ 25.12	30%	-	30%
5		신규	임OO (한국)	선임	'86.03.07 (남)	박사	에너지 공학	'12	실무	'23.4~ 24.12	30%	-	30%
6	OO대학교 (공동)	기존	이OO (한국)	박사 과정	'88.07.02 (여)	석사	화학 공학	'20	공동책임	'23.4~ 24.12	20%	40%	60%

나. 참여연구자 역할

번호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급	참여 비중(%)						상세 역할
					플랫폼	장비	기술	인력	기타	계	
1	주관	○○기술연구원	홍길동	책임	70	20	0	0	10	100	- 사업 총괄
2		○○기술연구원			10	60	30	0	0	100	- OOO시험분석 OOO 등 장비 운용 관리
3		○○기술연구원			10	30	60	0	0	100	- 운영위원회 및 장비도입심의회 운영
4	공동	○○대학교									
5		○○대학교									
...											

다. 연구지원인력 현황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 (개월)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단계			
										1년	2년	3년	

(4)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 (해당 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가. 기관명: (역할:)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나. 기관명: (역할:)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

[illegible]

- 본 과제와 관련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기재
- 현물의 경우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 이내로 인정하며, 내용연수 만료일이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일 이후여야 함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정수액

(단위: 천원, 달러)

[illegible]

-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구분	기관명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yy년		
			yyyy년		
			yyyy년		
		자본금	yyyy년		
			yyyy년		
			yy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 계		
기관명 (주관/공동/위탁)		현금	%	현금	현물	소계	%	현금	현물	소계	%			
연차												현금	현물	합계
1단계 1년차														
	소계													
1단계 2년차														
	소계													
1단계 3년차														
	소계													
총계														

2) 연구개발비 총괄 사용계획

가.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간접비	합계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계		
일반 ¹⁾	특례 ²⁾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나. 연차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간접비	합계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계		
일반 ¹⁾	특례 ²⁾										
1단계 1년차	현금										
	현물										
	소계										
1단계 2년차	현금										
	현물										
	소계										
1단계 3년차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다.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간접비	합계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계			
			일반 ¹⁾	특례 ²⁾								
1단계 1년차	현금											
	현물											
	소계											
1단계 2년차	현금											
	현물											
	소계											
1단계 3년차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공동연구개발기관명1: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간접비	합계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계		
		일반 ¹⁾	특례 ²⁾								
1단계 1년차	현금										
	현물										
	소계										
1단계 2년차	현금										
	현물										
	소계										
1단계 3년차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공동연구개발기관명2: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간접비	합계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계		
		일반 ¹⁾	특례 ²⁾								
1단계 1년차	현금										
	현물										
	소계										
1단계 2년차	현금										
	현물										
	소계										
1단계 3년차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수행역량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을 기재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참여연구원 및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수혜학생 기재)

가) 신규채용 구분: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우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합니다.

나)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합니다.

다)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라) 수혜학생은 담당역할에 “수혜학생”으로 기재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행정인력 및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비수혜학생(행정조교 등)에 대해 기재)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도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등록 국가,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을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계획: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라. 건축비 및 장비비 총괄

■ “(1) 건축비 총괄의 합계+(2) 장비구축비 총괄의 합계 + (3) 장비운영비 총괄의 합계”의 총합이 총 연구개발비와 일치해야 함

(1) 건축비 총괄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건축비				
전용공간(부지매입 등)				
합 계				
부담 내역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합 계			

■ 건축비 일체(전용공간 포함)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기관부담 연구개발비’로만 구성되어야 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불가)
- 기간 내 신규 건축의 경우 현금으로 산정
- 임차 또는 기보유한 경우 현물로 산정, 토지 및 건물이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
- 사업비요령 제17조에 따라 현물의 부담·과소 집행의 경우 정산시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 할 수 있으므로, 부담 내역의 근거를 확인하여 산정 (예 : 설계비 현물 계상 X, 설계비 현금 O)

○ 수행기관별 건축비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비 목	1연차 (202X년)	2연차 (202X년)	3연차 (202X년)	계
지자체	517,876	6,509,000	-	
	설계비	공정 작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합 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장비구입			
시설·설비 구축			
사업참여인력 인건비			
합 계			
부담 내역	지방자치단체 지원금(a)		
	기관부담 연구개발비(b)		
	정부지원 연구개발비(c)		
	합 계(d=a+b+c)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중 (%) = ((a+b)/d)			

- 장비구축비 중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함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10)
- 센터홍보 및 DB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은 제외(지원불가)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장비운영비(재료비, 소모품 등)			
장비운영 및 시험·성능평가 기술개발			
장비운영·사업수행 교육(재료비, 강사료 등)			
사업참여인력 인건비			
합 계			
부담 내역	지방자치단체 지원금(a)		
	기관부담 연구개발비(b)		
	정부지원 연구개발비(c)		
	합 계(d=a+b+c)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중 (%) = (a+b)/d)			

■ 장비운영비 중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함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10)

(단위 : 천원)

구입연월	내용연수 (년)	구입금액	재원		산정가액 (구입가 20%이내)	현물반영 해당연차	
			사업명	연구개발 기간			
1	클린벤치	19.08	10	000,000	○○○○사업	2013-2015	1차년
2	호호믹서장비	20.08	10	000,000	자체장비	-	1~3차 년
3							
합 계							

■ 현물의 경우, 1) 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활용, 2)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구입한지 5년 이내, 3) 내용연수 만료일이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일 이후, 4) 타사업으로 구입한 장비일 경우 해당사업 총수행기간을 경과(종료)한 것으로 4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년 구입가의 20%이내로 산정 가능

3) 연차별 연구개발비 상세 사용계획 (주관연구개발기관 :)

가. 1년차

(1)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급여 총액	참여 기간 (월)	인건비 계상률 (%)	합 계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예시)	책임	50,000	12	10	5,000		5,000
		(예시)	선임	30,000	12	15	4,500		4,500
	신규 인력	(예시)	연구원	25,000	9	50	9,375		9,375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연구지원인력									
	소 계								
합 계									

- 인건비 계상률은 10%이상을 반드시 계상하여야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연구원의 연구개발비 사용은 불인정 회수됨
- 내·외부 및 연구지원인력 구분
 - 내부 :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말하며 소속 여부는 4대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판단함
 - 외부 :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프리랜서, 타교학생(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라 학생연구자로 구분하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고 외부 인건비가 아닌 학생인건비로 계상), 실습연구원 등
 - 연구지원인력 : 비영리법인의 해당 연구부서에 소속된 자 한하여 직접비에서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함. 단, 행정 지원인력에 대한 연구수당은 계상 및 사용이 불가하며,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간접비에서 계상 불가
- ‘급여총액’은 당해년도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합한 금액을 말함
 1. 참여연구자 +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 본인부담금포함)
 2. 참여연구자 +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총담금
- * 급여총액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급여총액(연구수당, 연구개발능력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으로써 4대 보험과 퇴직급여총담금을 포함

(2)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단위 : 천원)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석통합과정	석·박통합과정	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성명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총인건비계상률 (%)	인건비(현금)
박사후 과정	(예시)	3,000			
박사과정	(예시)	2,500			
석사과정	(예시)	1,800			
학사이하	(예시)	1,000			
총 액					

(3) 연구시설 장비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 수 (수량, 건)	합 계		
				현금	현물	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건축비 포함)					
	합 계					

(4) 연구재료비

구 분	내 역	단 가	회 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현금/현물)
연구재료비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재료 제작비				
합 계					

(5)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 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연구활동비					
합 계					

(6) 용역 내역서 (해당 시)

용역명					
발주기관명		주관	()	공동	()
용역기간	(용역비용 : 천원)				
목표 및 필요성					
☐ 가나다 ☐ 가나다					
주요 내용					
☐ 가나다 ☐ 가나다					
활용계획					
☐ 가나다 ☐ 가나다					
용역기관 선정기준					
☐ 가나다					
■ 협약시 또는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3,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외주 용역비는 불인정 대상임					

(7) 국외출장 내역서 (해당 시)

출장명				
출장국가				
출장자 (참여인력에 한해 전원 기재)	성명	부서명	직급	출장시 수행내용
출장기간				
과제와의 연관성 및 필요성				
☐ 가나다 ☐ 가나다				
주요일정 (일자별 주요내용 간략 기재)				
☐ 가나다 ☐ 가나다				
결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가나다 ☐ 가나다				

나. 2년차(하위 양식은 상동)

다. 3년차(하위 양식은 상동)

4) 연차별 연구개발비 상세 사용계획 (공동연구개발기관 :)

가. 1년차

(1)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급여 총액	참여 기간 (월)	인건비 계상률 (%)	합 계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예시)	책임	50,000	12	10	5,000		5,000
		(예시)	선임	30,000	12	15	4,500		4,500
	신규 인력	(예시)	연구원	25,000	9	50	9,375		9,375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연구지원인력									
	소 계								
합 계									

- 인건비 계상률은 10%이상을 반드시 계상하여야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연구원의 연구개발비 사용은 불인정 회수됨
- 내·외부 및 연구지원인력 구분
 - 내부 :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를 말하며 소속 여부는 4대보험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판단함
 - 외부 :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프리랜서, 타교학생(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라 학생연구자로 구분하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고 외부 인건비가 아닌 학생인건비로 계상), 실습연구원 등
 - 연구지원인력 : 비영리법인의 해당 연구부서에 소속된 자 한하여 직접비에서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함. 단, 행정 지원인력에 대한 연구수당은 계상 및 사용이 불가하며,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간접비에서 계상 불가
- '급여총액'은 당해년도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합한 금액을 말함
 1. 참여연구자 +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 본인부담금포함)
 2. 참여연구자 +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총당금
- * 급여총액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급여총액(연구수당, 연구개발능력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으로써 4대 보험과 퇴직급여총당금을 포함

(2)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단위 : 천원)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석통합과정	석·박통합과정	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성명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총인건비계상률 (%)	인건비(현금)
박사후 과정	(예시)	3,000			
박사과정	(예시)	2,500			
석사과정	(예시)	1,800			
학사이하	(예시)	1,000			
총 액					

(3) 연구시설 장비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 수 (수량, 건)	합 계		
				현금	현물	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건축비 포함)					
	합 계					

(4) 연구재료비

구 분	내 역	단 가	회 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현금/현물)
연구재료비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재료 제작비				
	합 계				

(5)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 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연구활동비					
합 계					

(6) 용역 내역서 (해당 시)

용역명					
발주기관명			주관	()	공동 ()
용역기간	(용역비용 : 천원)				
목표 및 필요성					
☐ 가나다 ☐ 가나다					
주요 내용					
☐ 가나다 ☐ 가나다					
활용계획					
☐ 가나다 ☐ 가나다					
용역기관 선정기준					
☐ 가나다					
<p>■ 협약시 또는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3,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외주 용역비는 불인정 대상임</p>					

(7) 국외출장 내역서 (해당 시)

출장명				
출장국가				
출장자 (참여인력에 한해 전원 기재)	성명	부서명	직급	출장시 수행내용
출장기간				
과제와의 연관성 및 필요성				
☐ 가나다 ☐ 가나다				
주요일정 (일자별 주요내용 간략 기재)				
☐ 가나다 ☐ 가나다				
결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가나다 ☐ 가나다				

나. 2년차(하위 양식은 상동)

다. 3년차(하위 양식은 상동)

[붙임]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 3,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건별로 작성

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단계)구입임차	(x단계)x차년도(2021년)
연구시설·장비명	(국문) (영문)	고성능 패킷 캡처 리플레이 시스템 High Performance Packet Capture & Replay System		
연구장비분류	대분류	중분류		
모델명	IS4010E			
제작국가	한국	제작사	시스메이트	
구입방법	구매(○) 임차()		구입구분 내자(○) 외자()	
구입(임차)일자(예정)	20XX. 5		구입(임차)금액(예정)	50,000,000원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기관내부와 공동활용가능() 기관외부와 공동활용가능() 협의후 결정()			
연구 시설· 장비 개요	구입(임차)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고성능 패킷 수집기와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과제에서 시험하거나 얻어진 결과물을 성능적 측면과 정확도 측면에서 정확히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Wired Speed로 패킷을 수집하고 리플레이해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원리 및 특징	10 Gbps (9.95 Gbps) 성능으로 패킷을 캡처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 시스템 추가적으로 패킷 샘플링, 패킷 전송, GPS 타임스탬프 기능 지원		
	주요사항	10 Gbps POS Monitoring Interface (extensible OC-192c fiber, PPP/HDLC layer 2) PCI-Express 8x Bus Interface (PCI-Express 8x bus speed, Higher packet DMA) Hardware-based Packet Capturing Engine		
	사용용도 (활용방안)	실제와 유사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에서 Real Time으로 Wired Speed상에서 패킷을 생성해 내고 명확한 문자로 표현되는지의 검증과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하여 패킷 검증 효과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어, 실제 네트워크에 거의 유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본 연구의 검증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활용 계획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년평균 가동율 60% [(24시간X50주) / (40시간X50주)] 이상		
	운영비 확보 방안	해당 사항 없음		
	전담인력 확보 방안	○○기관 ○○팀에서 관리 및 운용할 계획이며, 전담인력 ○○○ 등 2명 내외 활용 예정 추가적인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202X년 신규채용 예정		
	유지보수 방안	판매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판매 업체의 전담 인력 활용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동일/유사장비명	관리부서	취득일시	공동활용 가능여부
	PLS-1000	지식정보보안연구부	2006	활용불가(), 제한적 활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단에서는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패킷 수집 시스템과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수집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본 과제에서 요구되는 고성능에는 부족한 사양임				
(구매 시) 타 기관 소유장비 공동활용 또는 임차사용 불가사유	고성능 패킷 수집 장비는 패킷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기본 기능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수집된 패킷을 분석하는 패킷 분석 엔진기술 개발과 알고리즘 검증 및 타당성 시험을 위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대량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개발 제품에 접속시켜 지속적으로 시험하여야 하여야 함으로 다른 과제와 공동 활용이 어렵다.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본 과제에서 개발 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개발 기간 동안 계속 개발 및 시험환경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매가 임차보다 경제적이다.			

<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작성 안내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삭제) >

- 연구개발계획서에 적은 장비명과 일치하도록 장비명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된 전체연구개발기간 중 3천만원 이상 구축예정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 작성함(구입, 임차 모두)
- 상기 기지재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 장비관리서비스(nfec.ntis.go.kr)에 등록 필수
- 장비분류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별표 1]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 참조

<참고 1>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

(동 페이지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삭제)

구분	내 용	출연금 인정기준
		非예타
건축비	부지매입, 건축조성, 리모델링, 설계/감리비	불인정
장비비	[장비구축비] ■ 장비구입, 시설·설비 구축(테스트베드 등) ■ 사업참여인력 인건비(장비도입 기획 등) ※ 센터홍보 및 DB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은 제외	70% 상한
	[장비운영비] ■ 장비운영비(재료비, 소모품, 전기료 등) ■ 장비운영 및 시험·성능평가 기술개발(방법론 개발 등) ■ 장비운영·사업수행 교육(재료비, 강사료 등) ■ 사업참여인력 인건비(장비관리·운영, 기술상담·자문·지도 등)	70% 상한
R&D	'장비운영 및 시험·성능평가 기술개발'을 제외한 연구개발비	불인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 10

<참고 2>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 기준

(동 페이지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삭제)

- 단계정산을 실시함에 따라 상시점검수수료 및 정산수수료를 책정된 기준에 따라 연차별로 차등 책정 (단, 단년도 과제는 예외)

- 연차별 상시점검 수수료 : 현 정산수수료의 85% 수준 적용

* 상시점검 정의에 따른 분기별 상시점검 추진 및 상시점검 보고서 제출

- 정산수수료 : 매 연도별 상시점검이 수행된 연구개발비 기준 정산수수료의 15%씩 가산하여 책정

(예시) 3년 일괄정산과제의 경우 : 매년 <정산수수료 표준액> 기준 정산수수료 산정

구분	상시점검수수료	정산수수료	연차가산	비고
1차년도	○	X	X	정산수수료의 85%
2차년도	○	X	X	정산수수료의 85%
3차년도 (최종)	X	○	○	3차년 정산수수료 + 1차년 정산수수료 15% + 2차년 정산수수료 15%

○ 정산수수료 표준액

구 분(연구개발비 규모*)	단가(천원)
1억원 미만	987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185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515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647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845
30억원 이상	2,043

* 연구개발비 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예: 지방비)의 합(현물은 포함되지 않음)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공동연구개발기관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 정산수수료 산출 예시

- 연구개발비가 2억원이고 공동연구개발기관 없을 경우 : 1,185,000원
- 연구개발비가 2억원이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 1개 있을 경우 : 1,185,000원 X 1.1(10%가산)=1,303,500원
- 연구개발비가 2억원이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 2개 있을 경우 : 1,185,000원 X 1.15(15%가산)=1,362,750원
- 연구개발비가 2억원이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 3개 있을 경우 : 1,185,000원 X 1.20(20%가산)=1,422,000원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세부사업명	지역전략산업기반고도화(R&D)	연구개발과제번호	(협약전 접수번호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책임자)	○○연구소(홍길동), ○○대학(김영수)		

위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지역산업지원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연구개발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수행에 동의하며, 본 연구개발과제가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지역산업지원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연구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나머지 각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대표하여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위임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에게 수여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연구책임자)

_____ (인) _____ (인)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책임자)

_____ (인) _____ (인)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책임자)

_____ (인) _____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 법인기관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개인인감, 대학 및 연구소의 경우는 직인을 각각 날인
 ※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도 서명 날인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 모두가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 별 날장 제출도 가능함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세부사업명	지역전략산업기반고도화(R&D)	연구개발과제번호	(협약전 접수번호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6.04.01 ~ 2028.12.3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중요시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제20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7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집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연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
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과제 협약 및 협약변경, 보고서 제출, 단계.최종.특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의 연구비 사용-정
별평가, 성과조사 및 평가 관리 산, 제재부가금 부과,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 연구개발정보의 검증

☐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주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동의

☐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
 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국가연구자번호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국가연구자번호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
 ◦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시 과제수행현황(참여연구
 행 정보 등 신용조회
 자)을 포함한 요구자료 제공

☐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중앙행정기관, 국회, 감사원 등 정부 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취급은행, 국가 R&D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조사, 기술료 징수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수행에 대한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 선정, 평가, 관리 업무의 수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주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고, 전공, 학위, 연구개발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 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참여연구자 정보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 번호 ²⁾	국가연구자번호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자필서명)
○○○ ¹⁾					

☐ 연구근접지원인력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 번호 ²⁾	국가연구자번호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자필서명)
○○○ ¹⁾					

연구개발기관 동의란

연구개발기관명	법인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법인 날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서명)

년

월

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1)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기재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기재
 2)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미 부여자는 주민번호 기입 생략가능
 3) 전체 인건비계상률에는 연구개발과제가 선정 될 경우, 연구개발시작일 기준으로 본 과제를 포함하여 예상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 계상률을 기재하여야 함
 ※ 참여연구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 67 -

- 68 -

연구윤리 · 청렴 및 보안서약서

세부사업명	지역전략산업기반고도화(R&D)	연구개발과제번호	(협약전 접수번호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6.04.01 ~ 2028.12.31		

본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구윤리 및 청렴 서약

-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 연구진실성 보호, 학술지 투고 등 학문교류에 따른 연구윤리, 인간 및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준수,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의 조성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겠습니다.
- ☐ 연구개발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 공정한 연구개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연구개발 수행에 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서약

-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및 과정의 종료 후에도 허락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본 연구개발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완료 혹은 중단 시점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는 것임을 인지하였습니다.

□ 작성자 정보

[illegible]

150 151 152

한국 산업 기술진흥원장 귀하

- 1)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와 연구근접
지원인력도 포함하여 기재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기재

※ 참여연구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세부사업명	지역전략산업기반고도화(R&D)	연구개발과제번호	(협약전 접수번호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6.04.01 ~ 2028.12.31		

본 사업의 신청(수행)을 위한 현금·현물부담금을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연차별 현금 납입 및 현물 부담(확약)

(단위 : 천원)

년 차	1차년도 (202 년)	2차년도 (202 년)	3차년도 (202 년)	계
현 금				
현 물				
계				

2. 연차별 현물 부담금액 및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 년)	2차년도 (202 년)	3차년도 (202 년)
인 건 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연구시설·장비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연구재료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연구활동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간접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계				

* 별첨 : 현물납입 내역 관련 증빙서류

202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명)

(단체장명)

(인)

직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납입확약서

세부사업명	지역전략산업기반고도화(R&D)	연구개발과제번호	(협약전 접수번호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6.04.01 ~ 2028.12.31		

본 사업의 신청(수행)을 위한 현금·현물부담금을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연차별 현금 납입 및 현물 부담(확약)

(단위 : 천원)

년 차	1차년도 (202 년)	2차년도 (202 년)	3차년도 (202 년)	계
현 금				
현 물				
계				

2. 연차별 현물 부담금액 및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 년)	2차년도 (202 년)	3차년도 (202 년)
인 건 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연구시설·장비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연구재료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연구활동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간접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계				

202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명)

(대 표)

(인)

직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연구개발기관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세부사업명	지역전략산업기반고도화(R&D)	연구개발과제번호	(협약전 접수번호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6.04.01 ~ 2028.12.31	소속 연구개발기관	

검 토 내 용	해당 여부	
	예	아니오
☐ 공고 내용 부합 여부 ◦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분야(과제), 기술 분야 등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가?		
☐ 신청자격 부합 여부 ◦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단체) 또는 사람이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되는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참여제한 여부 ◦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가?		
☐ 인건비 계상률 초과, 최소 인건비 계상률 등 준수 여부 ◦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하는가? ◦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최소 참여 인건비계상률은 10%를 충족하지 못하는가?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해당 신청기관과 상이한가? (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제출일자 : 20 . . .
연구개발기관명 : (인)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 (인)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세부사업명	지역전략산업기반고도화(R&D)	연구개발과제번호	(협약전 접수번호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6.04.01 ~ 2028.12.31	소속 연구개발기관	

위의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장과의 협약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전용공간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구분	내역
연구개발기관명	
전용공간 내역	
자가 및 임대여부	자가 () 임대 ()
주소 및 위치	
전용공간 면적	(m ²)
전용공간 면적당 단가	(m ²)당 원

- [붙임] 1. 전용공간 전체 및 내부를 촬영한 컬러사진 1부.
2. 면적당 단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세무서나 등기소 발행분)
3. 전용공간 도면 1부.
4. 지방자치단체 등의 현물출자확인 공문 사본 1부.
5. 토지이용계획(안) 1부(필요시, 등기소 발행분).

2026. 00. 00

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명) 대표자 대표자명 (인)
책임자 연구책임자명
(또는 공동연구책임자명) (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현물로 전용공간을 부담할 경우 관련 공문을 첨부